전주용와초등학교 학교 규칙

제정 2006.05.04. 관리 제5123호

1차 개정 2007.09.28.

2차 개정 2009.09.03.

3차 개정 2011.04.14.

4차 개정 2011.12.05.

5차 개정 2014.04.25.

6차 개정 2016.02.03.

7차 개정 2018.04.12.

8차 개정 2019.12.

9차 개정 2021.02.17.

10차 개정 2022.10.13.

11차 개정 2023.04.13.

12차 개정 2023.12.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전주용와초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14에 둔다.

제2장 수업 연한 · 학년 · 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수업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학년·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본교의 당해연도 교육과정 운영계획(수업일수, 휴업일 등)에 의하여 학교장이 정하여 운영한다. 제6조(휴업일 등) 본교의 휴일은 다음과 같다.

① 관공서의 공휴일

② 하계휴가 : 당해연도의 교육과정에 의함

③ 동계휴가: 당해연도의 교육과정에 의함

- ④ 학년말휴가: 당해연도의 교육과정에 의함
- ⑤ 개교기념일 : 4월 10일
- ⑥ 주5일수업제 실시에 따른 토요휴업일
- ⑦ 기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휴업일
- 가. 학교장은 제 1항에서 6항까지의 휴가기간은 법정수업 일수의 이수에 지장 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를 실시한다.
- 나. 학교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 다.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실습 또는 등교를 시킬 수 있다.

제3장 학급 편제 및 학생정원

제7조(학생수용) 본교는 학구 내 학령아동 전원과 조기입학 심의위원회에서 승인 한 만5세 아동을 수용한다.

제8조(학급편제) 본교의 학급편제는 전라북도전주교육청교육장이 매 학년도에 배 정하는 학급수로 한다.

제9조(학급당 학생 정원) 본교의 학급당 정원은 전라북도전주교육청교육장이 매학년도에 배정하는 학급당 학생수로 한다.

제4장 교과 및 교육과정 · 수업일수와 과정수료의 인정 및 졸업

제10조(교과 및 교육과정) 본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11조(수업일수) 본교의 수업일수는 매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제2호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10분의 1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수료 및 졸업)

-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 ② 학교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별지 1호 서식의 졸업장을 수여한다.
- ③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제5장 입학 · 편입학 · 전 · 입학 취학의무 면제 등

제13조(입학 시기) 본교의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4조(입학 결정)

- ① 본교의 입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통지서를 받은 아동과 본교 규칙 제3장 7조에 의하여 학교장의 입학허가로써 결정된다.
- ②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 외의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고자 할 때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학교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을 승낙한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아동의 거주지 관할 등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5조(편입학)

- ① 외국 체류 중 귀국한 아동의 편입학은 체류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학한다.
- ② 편입학 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편입학 아동은 학교장이 요구하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편입학의 시기는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수 있다.

제16조(전·입학)전·입학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17조(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 또는 유예는 학교장이 의무교육 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결정한다.
- ② 취학의무의 면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
-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일정기간 외국에서 취학할 목적으로 그 보호자와 동반 체류하는 경우 그 사유와 여권 사본 등을 갖추어 이를 처리한다.
- ⑤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은 자가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교의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재취 학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18조(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으로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인정하거나 상급학교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19조(조기진급의 범위) 조기 진급이란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함을 말한다.

제20조(대상자 선정)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 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에 의하여 학교장이 이를 선정한다.

제21조(대상자 학습방법)

- ① 자학자습에 의한 조기 이수
- ② 이수과정 압축에 의한 조기 이수
- ③ 상설 동학년 특별반 편성 운영
- ④ 지역합동 교과 특별반 설치 운영
- ⑤ 여름·겨울방학 심화과정 중에서 교과의 특성에 따라 선택하거나 둘 이상의 방법을 통합하여 운영하다.

제22조(이수인정 평가) 수시로 실시되는 평가를 종합하여 판정한다.

제23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에게 교과목별 기 이수의 인정을 위하여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교감과 교사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는 위원5명이상 <u>15명</u> 이하로 구성 하되, 위원장은 교감이 된다.
- 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
 - 나.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에 관한 사항
 - 다.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결과 조기 수료 및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
 - 라. 기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하여 학교장이 심의를 의뢰한 사항
 - 마.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에 관한 사항

제7장 출결사항

제24조(출결처리) 학생 출결에 관한 제반 사항은 당해 연도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을 근거로 관리한다.

제8장 체험학습

제25조(수업의 운영)

- ① 체험학습은 개인 교환학습, 단체 교환학습, 보호자 등과 함께 하는 교외 체험학습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 ② 개인 교환학습 기간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체험학교의 형편에 따라 1 개월(4주) 이내의 기간으로 운영하되 실시 여건 변화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실시할 수 있다.
- ③ 단체 교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단체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주관하는 체험학습의 경우에만 출석으로 인정한다.
- ④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 휴업일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단, 가정학습 사유 미인정)(2023.04.13. 개정)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 운영이 가능하다.(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2023.04.13.** 신설)

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15일 이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 사유로 인정한다.(2023.04.13. 개정)

⑤ 이 외 체험학습에 관한 사항은 상급 기관의 최근 지침에 의거 학교장이 이를 시행한다.

제9장 학생포상(시상)

제26조【종류】본교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협의회 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

제27조【시기】시상은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28조【외부로부터의 시상】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거치 지 않고 관계 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에게 추천을 상신한다.

제10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9조 【구성 및 운영】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 주용와초등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제11장 기타

제30조(학칙개정 절차)

- ① 학칙은 교직원 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관할교육지원청의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들(설치목적, 명칭, 위치, 남녀공학,학과명칭, 학급 수, 학급당 학생 수 등)에 대해서는 관할교육지원청의 인가를 받은후 이를 확정하여 시행한다.
- ② 학칙개정절치에 관한 시항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2항의 학생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장애학생의 교육에서의 차별 금지)

- ①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 거부, 전학 강요, 전입 거부 등을 해서는 안 된다.
- ② 특수교육과 관련한 서비스 제공에서 차별하지 않는다.
- ③ 특정 수업이나 실험 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의 제한이나 배제, 거부가 있어서는 안 된다.
- ④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이 아닌 자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다.
- ⑤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을 요구 하지 않는다.(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

제32조(기타의 비용 징수)

- ① 본교의 학생으로부터 받는 비용(수익자부담경비)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징수한다.
- ② 수익자 부담이 아닌 경비는 학교교육비로 충당한다.

제12장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22.10.13 개정)

제33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 ①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34조(학업중단숙려제)

- ①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으로 선정한다.
 - 1.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유예신청서 또는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 2. 검정고시 응시, 홈스쿨링, 평생교육시설·미인가 교육시설에서 학습하기 위해 학업중단 의사를 표현한 학생
 - 3.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진로·진학 담당교사 등의 협업을 통해 학업 중단 징후가 있다고 진단한 학생
 - 4. 학업중단 예방위원회에서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한 학생
 - 5.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 6. 그 밖에 학생 관찰, 상담 등으로 위기 정후가 발견되어 학교장이 숙려 제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연락 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 2. 질병 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 출국(유학, 이민), 미인정 유학 등으로 부득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 3.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 4.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에서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 ④ 학업중단 숙려 기간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 1. 숙려 기간은 최소 1주 이상, 최대 7주 이하로 운영한다.
 - 2. 숙려제는 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숙려 기간 내 주말, 공휴일, 휴 업일, 방학 기간 등을 숙려 기간에 산입한다. (단, 평가 기간 제외)
 - 3. 숙려제 실시 횟수 및 세부 운영 방법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

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13장 학생 생활

제35조(학교생활규정) 학생의 학교생활(학생 자치활동, 학생 인권, 학생 징계, 징계 외의 지도 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 목적상 필요한 소지품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전주용와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으로 정한다.(2023.12.15.)

부 칙

- ① (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 ② (시행세칙) 본 학교규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③ (개정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개정안이 확정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